

#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633호

나. 발 의 자 : 이민옥 의원(찬성자 10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03일

#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시장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하고,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함(안 제5조)

나.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(안 제8조제1항)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,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운영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의됨.

### 나.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

- “성인지 예산제”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, 2011년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.
-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의 ‘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’ (이하 ‘작성기준’)에 따라 ▶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▶성별영향평가사업, ▶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.
- 2023년 서울시 성인지예산 규모는 293개 사업에 3조 8,937억원임.<sup>1)</sup>

---

1) 전년 대비 30개 사업 감소했으나, 예산은 655억원 증가함.

## <2023년 서울시 성인지예산 현황>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분	대 상 사 업	회계별	사업수	예산액
		총계	293	3,893,721
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</li> <li>◦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,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</li> </ul>	소계	47	805,244
		일반회계	44	780,055
		기타 특별회계	2	24,339
		기금	1	850
성별 영향 평가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 평가대상 예산사업</li> </ul>	소계	120	871,173
		일반회계	103	623,687
		기타 특별회계	16	247,406
		기금	1	80
자치 단체 특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 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</li> </ul>	소계	126	2,217,304
		일반회계	119	2,204,721
		기타 특별회계	4	12,286
		기금	3	297

### 다. 주요 개정사항 검토

#### (1)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신설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하여 ▶ 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, ▶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, ▶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, ▶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함.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제5조(성인지예산 대상사업)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</li> <li>2.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</li> <li>3. 교육, 체육, 문화, 편의시설, 공공시설 사업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</li> <li>4.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</li> <li>5.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</li> <li>6.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

- 행정안전부의 ‘작성기준’은 선정기준과 절차가 상이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고,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적용대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입법효과가 있음.
- 다만, ‘작성기준’에서 제시한 분류유형에 부합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, ‘작성기준’과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## 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지역성평등지수”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.</u></p>
<p>제5조(성인지예산 대상사업)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</u></p> <p>2. <u>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</u></p> <p>3. <u>교육, 체육, 문화, 편의시설, 공공시설 사업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</u></p> <p>4. <u>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</u></p> <p>5. <u>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5조(성인지예산 대상사업)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</u></p> <p>2. <u>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</u></p> <p>3. <u>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</u>  <u>가.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</u>  <u>나.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</u>  <u>다.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</u></p> <p>4. ~ 6. (삭제)</p>

### (2) 협의체 구성 시 성별 비율 개선(안 제8조)

-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협의체의 양성평등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.

현 행	개정안
제8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<u>구성한다.</u>	제9조(협의체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

- 현재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는 총 13명(당연직 4명, 위촉직 9명)으로 구성되었으며,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은 5명이고, 남성은 4명임.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과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**「양성평등기본법」**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시·도위원회

**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**

제15조(시정참여 확대)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과 조례의 위원 성별 비중을 일치시켜 조례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임.
- 다만,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 달리 성별 비율의 적용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### 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9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, <u>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	제9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, <u>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소연	02-2180-8065